

거여동 20-10번지 신축공사 대출 관련

연 대 보 증 계 약 서

채 권 자 량대부 주식회사

채 무 자 주식회사 두정

연대보증인 주식회사 두정종합건설

우 ■■■■

2018년 11월 16일



연대보증계약서

본 연대보증계약서[이하 "본 계약(서)"]는 2018년 11월 16일 아래의 당사자들 사이에서 체결되었다.

채권자

량대부 주식회사

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114길 13, 3층(논현동, 국선빌딩)

채무자

주식회사 두정

서울시 송파구 [REDACTED]

연대보증인

가. 서울시 송파구에 등기된 본점을 두고 있는 주식회사 두정종합건설

나. 서울시 광진구 [REDACTED]에 주소를 두고 있는 우 [REDACTED]

(이하 위 연대보증인들을 총칭하여 "연대보증인(들)")

전 문

주식회사 두정(이하 "채무자")는 서울 송파구 거여동 20-10번지 빌라 재건축 사업(이하 "본건 사업")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, 차주로서 대주인 채권자와의 사이에 2018년 11월 16일 대출약정금 합계 금 일억(W100,000,000-)원인 대출약정(서)[이하 "대출약정(서)" 이라 하며, 이후 변경 또는 수정된 약정을 포함]을 체결하였다.

한편, 연대보증인들은 본건 대출약정상의 차주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출원리금 채무 등 대출약정에 따른 피담보채무 일체의 지급을 연대보증하기로 하였다.

이에 본 계약의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본 계약을 체결한다.

제 1 조 용어의 정의

본 계약서에서 사용된 용어는 본 계약서에서 달리 정의되지 아니하는 한 대출약정서에서 정의, 사용된 용어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.

제 2 조 연대보증채무의 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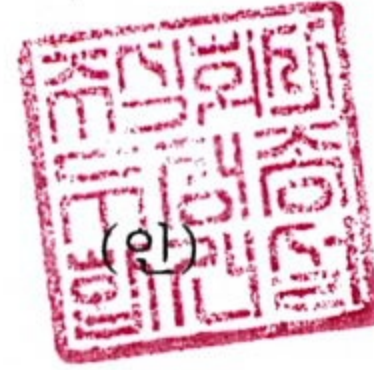
이상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의 당사자들은 본 계약서의 원본을 1부 작성한 후 본 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였으며, 원본은 채권자가 보관하고 연대보증인들은 각 그 사본을 보관하기로 하였다.

연대보증인

주식회사 두정종합건설

서울특별시 송파구 [redacted]

대표이사 임 [redacted]



연대보증인

우 [redacted]

서울시 광진구 [redacted]



채권자

랑대부 주식회사

[법인등록번호: 110111-6325115, 대부업등록번호 2018-금감원-1324 (P2P연계대부업)]

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114길 13, 3층 (논현동, 국선빌딩)

대표이사 정 상 원

